

공사 시방서

[화웨이사업센터 분화온실 (가동) 출입문 설치공사]

2021. 04

1. 적용범위

- 1) 본 시방서는 화훼사업센터 분화온실 (가동) 출입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사항은 화훼사업센터 담당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 5) 재료명은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 할 것.
-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결정한다.

2.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 1) 일반시방서
- 2)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의 기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 해야 한다.

2.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2.3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비 계 기 동	간격 1.5m ~ 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동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동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동 간격 10m ~ 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동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동과의 연결	수직 수평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동에 연결 결속 시킨다.
밀 받 침	비계기동의 최하단부에는 밀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동, 수평띠장, 장선, 가새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동(비계기본틀)에는 밀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밀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동을 구조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2.5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중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3.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3.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3.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 부터 밀폐된 공간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 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 규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3.4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4.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본 품에는 준공청소를 위한 품이 계상되어 있다.

창 호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 일반사항

1.1.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승인도면에 의한다.

1.1.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1.1.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1.4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

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2.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2.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썬기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2.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 2) 충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 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2.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2.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 창호철물(HARDWARE)

1.3.1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 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HAFELE BY GERMAN)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1.3.2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STANDARD

1.3.3 견본품 제출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카다로그 CERTIFICATE OF COMPLIANCE(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HARDWARE SCHEDULE

1. 시공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1.3.5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1) HARDWARE ITEM의 명칭
 - 2) MODEL 혹은 TYPE NO.

-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 4) 마감 색상
- 5) 적용공업 규격

유 리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다.

1.2. 유리 및 거울공사

1.2.1 종류 및 용도

시공 부위	품 종	두께	유 리 구 성	색 상
분화온실	강화유리	10mm, 12mm		투명

1.2.2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 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2.4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 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5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유리제작

1.3.1 복층유리

1. 품 질 :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일 것
2. 건 조 제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일 것
3.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일 것
4. 2차 실란트 : AutoSealing된 아래와 같은 제품일 것

1.3.2 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알미늄 재질일 것

1.3.3 부재료

1. 품 질 : 쇼아경아 90° 네오플렌계 고무를 사용 할 것

1.3.4 유리끼우기 시공

1. 시공환경

- 1) 항상 4°C(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엷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엷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 8)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엷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엷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12) 접착제를 충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3) 시공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5) 시공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3.5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 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유리 실런트 공사

1.4.1 재 료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4.2 시 공

1. 충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자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부까지 달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 장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

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들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철거 해체 공사

1 철거공사

1.1. 일반사항

-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조건

-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

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 (7).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 (9).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0).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11).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 (1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4).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 (15).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 (16).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3. 해체 및 철거

-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절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총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